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종교단체 대표

(경유)

제목 선교(인도 개종방지법) 관련 안내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교부는 최근 인도 내 개종방지법 위반으로 우리 국민 구금 사건이 발생한 것과 주 인도지역 공관(주인도대사관, 주첸나이총영사관, 주뭄바이총영사관)이 관할 지역의 개종방지 법령 내용을 각 공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20.12.19. 우리국민 선교사 1명이 UP주 개종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7개월 여간 현지 교도소에 구금되었다가, 최근 관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구금 해제됨

* 인도 UP주 개종방지법(2020.11.28. 발효) : 강압, 부당한 영향력, 유혹, 사기적 수단 등을 통해 타인을 개종시키거나 시도할 경우, 징역 1년~10년, 벌금 15,000~50,000루피 부과

3. 이와 관련, 외교부의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선교 활동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선교단체 및 유관기관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인도 9개 주에서 개종방지법을 제정 및 시행중임에 따라 우리 선교단체 및 선교사가 현지 법령 미준수로 인해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은 상황임
- 상기 감안,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 인도 개종방지법 시행 지역 내 선교활동 자제 및 동 지역에 선교사 파견 자제
 - 각 선교단체별 개종방지 관련 법령 숙지(별첨 파일 참조) 및 소속 선교사에 대한 안전 유의 강화
 - 관할 재외공관(주인도대사관, 주첸나이총영사관, 주뭄바이총영사관)과의 긴밀한 연락망 유지 등

붙임 : 인도, 개종행위 처벌 관련 안전 공지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주사 **이윤호** 행정사무관 대결 2021. 7. 21. 종무2담당관 전결
이규석

협조자

시행 종무2담당관-2734 (2021. 7. 21.)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http://mcst.go.kr>

전화번호 044-203-2325 팩스번호 044-203-3462 / on2014@korea.kr / 대국민 공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인도, 개종 행위 처벌 관련 안전 공지

2021.7.20.(화)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1. 인도 형법(IPC, Secion 295A)은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

※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병행 가능)

2. 인도 외국인법 14조에 따라 사증 발급 시 허용된 입국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사증 규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최대 5년의 징역 처벌이 가능하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추방 및 최대 7년간 재입국 불허 가능

3. 아울러, 일부 주(9개주)에서는 개종방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 인도 내 각 주별 개종방지법 현황

주(州)	처벌 행위	법정 형량	시행 및 제정 시기
오디샤	강압, 유혹, 사기 등으로 개종 시도	징역 최대 2년 벌금 최대 10,000루피	1967
아루나찰 프라데시	상동	징역 최대 2년 벌금 최대 10,000루피	1978
차티스가르	상동	징역 최대 4년 벌금 최대 20,000루피	2006
자르칸드	상동	징역 최대 4년 벌금 최대 100,000루피	2017
구자라트	강압, 유혹, 사기 및 <u>결혼</u> 등으로 개종 시도	징역 3~10년 벌금 최대 5,000,000루피	2003
우타라칸드	상동	징역 3~7년 벌금 법원 판결에 따름	2018
히마찰 프라데시	상동	징역 1~7년 벌금 최대 50,000루피	2019
우타르 프라데시	상동	징역 1~10년 벌금 최대 50,000루피	2020
마드야 프라데시	상동	징역 1~10년 벌금 최대 100,000루피	1968

끝.